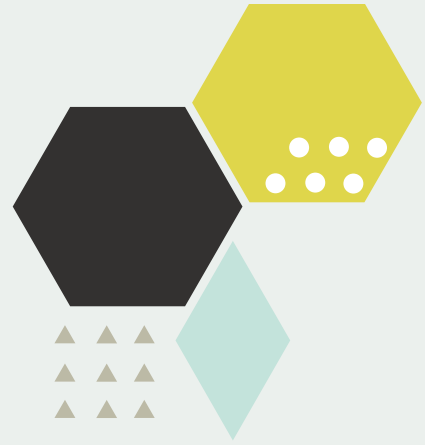




ISO 37001 부패 방지경영시스템의 이해

KCCA 검증심사원 황선영

ISO 37001 9장 성과평가



제 9장 성과평가

9월에 이어 내부심사에 대한 사항이 계속된다.

2) 부패방지 목표

단순히 부패방지 목표만 확인할 것은 아니고 조직상황, 의사소통 및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 목표가 측정 가능한지의 여부(가능한 경우)
- 외부 및 내부이슈,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식별된 부패 리스크를 고려 했는지의 여부
- 달성 가능한지의 여부
-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행되었는지의 여부
- 부서나 팀의 인원이 부패방지 목표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
- 목표의 달성 시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중간이상의 부패리스크

내부심사 동안, 내부심사원은 부패리스크 평가표를 검토할 것이고 부서나 팀에 따라 부패리스크가 중간 이상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내부심사 포인트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	확인사항
7.2.2.2 고용 프로세스	고용 전, 인사이동 전, 또는 승진 전에 해당 인원에 대한 실사 여부 적정한 주기로 부패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지의 여부
7.3 교육훈련	부서나 팀의 임직원 및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하여 부패방지 인식 및 교육훈련의 실행 여부
8.2 실사	부서나 팀의 임직원 및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었는 지의 여부

부적합 등의 발행

부적합 등의 구분

부적합 등의 보고서 발행에 앞서 중부적합, 경부적합 및 권고사항의 구분이 필요하며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해당 조건
중부적합	심사 발견사항 중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심각한 누락 또는 부족함이 있는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경부적합 발생으로 경영시스템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경부적합	심사 발견사항 중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실행증거가 일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권고사항	발견사항 중 경영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모순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합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으나, 부적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적합 및 권고보고서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적합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조직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행하면 된다.

(부적합 보고서 예시)

부적합 구분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부서명	
부적합 번호		일자	
표준/관련 문서		조항번호	
부적합 기술			
부적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권고 보고서 예시)

권고번호	심사표준 및 조항	권고사항 내용
		[제목] 권고내용기술 심사근거:
		[제목] 권고내용기술 심사근거:

부적합 등 보고서 발행 시 유의사항

부적합 등 보고서를 발행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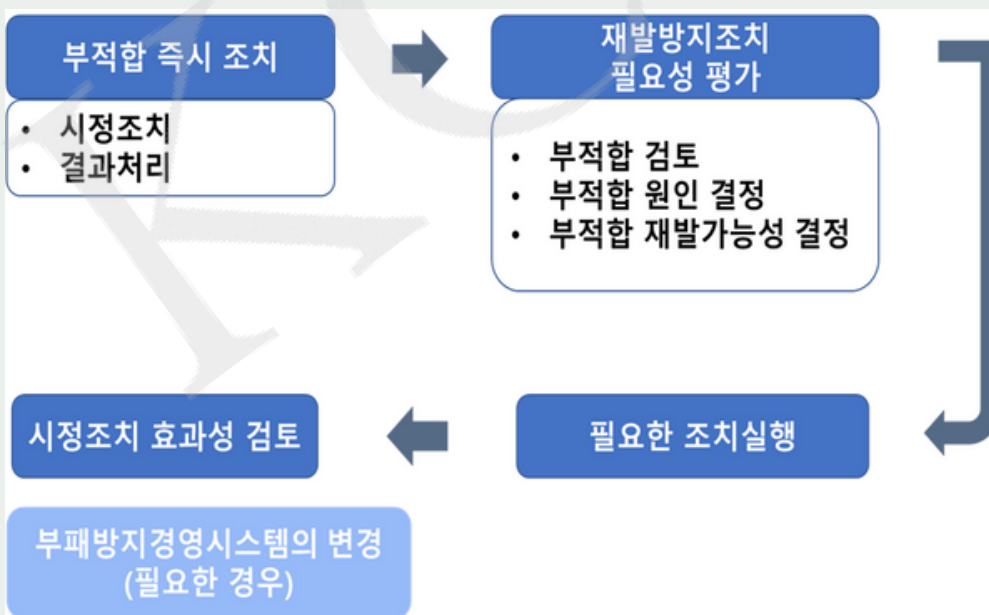
1) ISO 37001 표준의 요구사항(또는 조직이 정한 문서)에 근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충분한 근거 없이 부적합 등을 발행하게 되면 내부심사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시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 권고사항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권고를 발행할 때,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심사원의 기대나 바램이 과연 현재 조직의 상황, 자원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 동일한 조항에 다수의 부적합이나 권고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적합이나 권고를 많이 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분별한 발행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발견사항을 통합하여 부적합 등을 발행하면 된다.

시정조치 프로세스



내부심사에서 부적합이나 권고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조직에 따라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TIP. 모든 권고사항을 시정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사항의 시정조치여부의 판단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즉, 부패방지 책임자나 부패방지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해 둘 수 있을 것이다.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통하여 심사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적합 사항
- 시정 및 시정조치(계획)
- 시정조치 확인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경우, 시정조치의 효과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정조치 보고서 내에 부적합을 발행한 내부심사원의 유효성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정조치 보고서

1. 부적합 사항			
부적합 구분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권고사항	부서명	
부적합 번호		부적합 발행 일자	
표준/관련문서	KS A ISO 37001:2016	조항번호	
2. 시정 및 시정조치(계획)			
시정 조치	근본 원인 분석	<small>문제점의 근본원인을 기술</small>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color: blue;"> 피심사 대상부서 작성 </div>	
	시정 및 시정조치 혹은 계획	<small>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차후의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내용이나 계획을 기술</small>	
	시정조치 완료일 (예정일자)		
3. 시정조치 확인			
피심사부서	일자:	심사원	유효성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

부적합 발행 심사원

내부심사 결과보고

내부심사 일정 및 시정조치(또는 시정조치 계획)가 완료되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부패방지 책임자, 최고경영자 및 해당하는 경우, 지배기구인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부심사 결과보고는 일단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보고되고 해당 결과는 경영검토 보고서에 포함되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보고되는 형태를 갖는다.

3. 경영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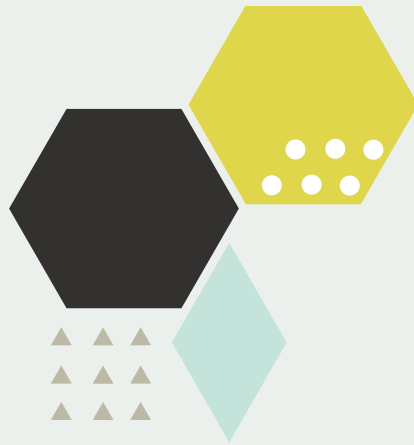
ISO 37001 표준은 조직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그리고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배기구, 최고경영자 및 부패방지 책임자로 하여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상태
- 외부 및 내부이슈의 변화
- 부적합과 시정조치
-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 심사결과
- 부패에 대한 보고서
- 조사
- 부패리스크의 성질과 범위
- 부패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효과성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TIP.

지배기구의 검토는 지배기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배기구가 경영검토 보고서를 승인할 필요는 없으며 보고되어 검토만 이루어지면 된다. 부패방지 책임자는 최고경영자 및 지배기구에 대하여 경영검토 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WWW.KCCA.KR